

인증서의 발급과 동시에 품질, 환경, 안전보건, 비즈니스 연속성, 부패방지, 항공우주품질, 의료기기품질 및(또는) 원자력 공급망 품질 경영체제에 대한 인증 획득에 대한 언급(홍보)을 하실 수 있으며, 인증마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.

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올바른 인증사실 언급(홍보)과 인증마크 사용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.

1. 일반사항

- (1) 인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인증마크 사용 및 인증사실을 언급 또는 홍보할 수 있습니다.
- (2) 인증에 대한 홍보, 인증표시, 인증마크 등의 사용은 조직이 획득한 인증규격, 사업장, 인증범위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, 인증유효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. 만약, 인증이 정지 혹은 취소된 경우, 인증에 대한 홍보, 인증서 및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합니다.
- (3) 인증기관 및/또는 인증시스템의 명예를 손상시켜 공공의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방식으로 인증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.

2. 인증문구의 사용(인증에 대한 언급 및 인증 사실의 홍보)

- (1) 인증문구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
 - 인증된 고객의 식별 정보 (예: 브랜드나 회사명)
 - 경영시스템 유형 (예: 품질, 환경, 안전보건 또는 비즈니스 연속성) 및 해당하는 표준
 - 인증서를 발행한 인증기관
- (2) “이 제품은 ISO 9001 품질경영체제에 대한 적합성을 인증 받은 공장에서 제조 되었다”라는 명확한 진술을 포함하여 인증사실을 홍보할 수 있으나, 제품에는 표시할 수 없습니다.
- (3)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3 조 3 항에 따라 “세계 최초로 OO 부문에서 ISO 9001 / 14001 / 45001 / 22301 / 13485 / 37001 / 19443 및 KS Q 9100 인증을 획득하였음”과 같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 없이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(4) 인증획득에 대한 홍보는 인증사실에 대한 오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.
(예시: “OO 제품이 ISO 9001/14001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음.” 처럼 ISO 9001 인증등록조직이 개발 기능이 없는데도 이에 대한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홍보하면 안됩니다)
- (5) “ISO 로부터 인증 받은”, “ISO 가 인증한”, “ISO 인증”, “ISO 인증서”, “ISO 등록” 등의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(6) 생산한 제품에 인증표시, 인증기관명, 인증규격, 인증번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, 제품인증인 것처럼 오해되도록 홍보할 수 없습니다.
- (7) 인증범위가 축소되는 경우, 모든 홍보물을 수정하여야 합니다.
- (8) 인증범위 이외의 활동과 사업장에 적용됨을 암시하지 않아야 합니다.
- (9) 표시,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, 인증 등의 표시,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3. 인증서의 사용

- (1) 인증서는 인증 받은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하며, 인증등록조직에 의하여만 사용되어야 합니다.
- (2) 인증서는 복사하여 사용 가능하나, 복사본인 경우 복사본임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.

4. 인증마크의 사용

- (1) 인증마크는 Kiwa Korea 마크(인증기관 마크)와 인정기관(KAB)의 마크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, 인증마크는 인증범위 내에서 인증유효기간 동안만 사용하여야 합니다.
- (2) ISO (국제표준화기구)의 마크 및 IAF MLA 마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(3) 인증마크와 인정마크를 동시에 사용하기가 어려운 경우, 인증마크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나, 인정마크만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.
- (4) 인증표시는 원본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, 인정마크의 크기는 최소한 가로 15mm, 세로 10m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.
- (5) 인증마크는 원본 색상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불가피한 경우에는 흑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.
- (6) 인증마크는 인정받은 분야와 관련이 있는 홍보물 등에 사용될 수 있으나, 제품 또는 제품포장에는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,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1)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한 경우
 - 광고 또는 홍보물: 산업분류상 인증기업의 제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명판, 명함, 교재, 편지지, 브로셔, 일반문서, 송장 등의 인쇄물 또는 제작물 또는 기타 광고 수단에는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 - 2) 인증마크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
 - 제품: 제품에는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이는 제품에 대한 적합성 표시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 - 제품의 포장: 제품의 안전 또는 유통의 편의성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포장으로 제품을 해체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제품의 포장에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즉, 소비자가 직간접적으로 접하는 제품포장에는 인증문구는 사용될 수 있으나, 인증마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 - 동반되는 정보(accompanying information): 분리하여 사용하거나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,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즉, 제품에 부착되는 유형 라벨(type label)이나 식별판(identification plates) 및 제품설명서는 제품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에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.
 - 깃발, 건물, 차량, 거래 샘플 또는 기타 제품 적합성에 관한 진술서(예, 시험성적서, 교정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 등)에는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4. 인증마크 사용 예시

Kiwa Korea 로부터 품질, 환경, 비즈니스 연속성 및(또는)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인증 받은 조직은 다음에서 제시된 형태로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인증마크(Kiwa Korea 마크)는 왼쪽에 위치하고, 인정마크(KAB 마크)는 오른쪽에 위치한다.

인증 받은 경영체제와 KAB 승인번호를 마크 아래쪽에 나란히 표기한다.

여러가지 규격을 인증 받은 경우, [그림 7]과 같이 표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인증마크와 인정마크를 동시에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, [그림 8]과 같이 인증마크만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하나, 인정마크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[그림 1] ISO 9001:2015 인증인 경우



ISO 9001:2015



KAB-QC-34

[그림 2] ISO 14001:2015 인증인 경우



ISO 14001:2015



KAB-EC-21

[그림 3] ISO 22301:2019 인증인 경우



ISO 22301:2019



KAB-BC-03

[그림 4] ISO 45001:2018 인증인 경우



ISO 45001:2018



KAB-OC-31

[그림 5] KS Q 9100:2018 인증인 경우



KS Q 9100:2018



KAB-AS-01

[그림 6] ISO 13485:2016 인증인 경우



ISO 13485:2016



KAB-MC-03

[그림 7] ISO 37001:2016 인증인 경우



[그림 8] 여러 규격 인증인 경우



[그림 9] 여러 규격 인증인 경우



[그림 10] KAB 로고없이 사용할 경우



인증사실 홍보 및 인증마크 사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Kiwa Korea (키와 코리아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Tel: 02-3397-0101, Fax: 02-3397-0105, system@kiwa.kr)